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00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와 검토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2008

사회적 약자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의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와 검토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 2.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조 소 영(부산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I. 인권조례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 .....	1
1. 문제의 인식 .....	1
2. 실태조사의 목적 .....	2
3. 실태조사의 방법(연구방법) .....	3
II. 인권조례 실태조사와 평가를 위한 전제적 논의 .....	4
1. 인권조례의 의의와 의미 .....	4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미: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전제적 논의 .....	5
(1) 사회적 약자 .....	5
(2) 소수자 .....	7
III.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황 .....	9
1.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조례의 실태 .....	9
(1) 장애인 인권 관련의 경우 .....	10
1) 서 설 .....	10
2)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11
① 조례의 내용 .....	11
② 검토 사항 .....	12
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13
① 조례의 내용 .....	13
② 검토 사항 .....	14
4)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6
① 조례의 내용 .....	16
② 검토 사항 .....	17
5)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19
① 조례의 내용 .....	19

② 검토 사항 .....	20
6)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21
① 조례의 내용 .....	21
② 검토 사항 .....	23
7)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24
① 조례의 내용 .....	24
② 검토 사항 .....	26
(2)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 .....	28
1) 서 설 .....	28
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	28
① 조례의 내용 .....	28
② 검토 사항 .....	30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	30
① 조례의 내용 .....	31
② 검토 사항 .....	32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	32
① 조례의 내용 .....	33
② 검토 사항 .....	34
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35
① 조례의 내용 .....	35
② 검토 사항 .....	36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39
① 조례의 내용 .....	39
② 검토 사항 .....	41
7) 기타 관련 조례 .....	42
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42
②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43
(3) 노인의 인권 관련 조례 .....	43
1) 서 설 .....	43
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44
① 조례의 내용 .....	44
② 검토 사항 .....	46
(4)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	48
1) 서 설 .....	48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	49

① 조례의 내용 .....	49
② 검토 사항 .....	52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	55
① 조례의 내용 .....	55
② 검토 사항 .....	57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	58
① 조례의 내용 .....	58
② 검토 사항 .....	60
5)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1
① 조례의 내용 .....	61
② 검토 사항 .....	63
6)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64
① 조례의 내용 .....	64
② 검토 사항 .....	65
7) 기 타 .....	66
(5) 여성 인권 관련 조례 .....	67
1) 서 설 .....	67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	67
① 조례의 내용 .....	67
② 검토 사항 .....	67
3)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69
① 조례의 내용 .....	69
② 검토 사항 .....	72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73
① 조례의 내용 .....	73
② 검토 사항 .....	74
5)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	75
① 조례의 내용 .....	75
② 검토 사항 .....	77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78
① 조례의 내용 .....	78
② 검토 사항 .....	80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80
① 조례의 내용 .....	80
② 검토 사항 .....	82

2.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인권관련 조례의 실태 비교·분석 .....	83
(1) 개 설 .....	83
(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84
(3)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95
(4)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98
(5)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103
(6) 사회복지기금 조례 .....	106
(7)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	113
(8) 보육 조례 .....	116
(9)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2
(10) 여성회관 운영 조례 .....	141
(11) 여성발전 기본조례 .....	150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진주시·경상남도의 현행 인권관련조례 실태의 비교정리표	178
IV. 법제 개선방향과 입법안 연구 .....	181
1. 인권기본조례의 부존재 .....	181
2. 인권과 복지권 관계설정의 혼란과 새로운 인식 정립의 필요성 .....	182
3. 거주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의不在 .....	184
4. 노인 인권관련 조례의 흠결 보완의 필요성 .....	185
5. 여성 인권 보장 제도화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6.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질적 입법화와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성	

#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와 검토

##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조 소 영\*

### I. 인권조례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

#### 1. 문제의 인식

소수자라는 용어는 그 시작이나 전개에서 다인종, 다민족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의 한국 사회에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소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라고 불릴만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삶을 영위해 가는 사회터전 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됨으로써 공동체로부터의 박탈감을 갖지 않은 채로 구성원의 일원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구축문제는 그러한 데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건 인류역사 속에는 거의 항상 사회적 약자 집단과 소수자 집단은 상존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그저 이상론에 불과하게 될 뿐이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원칙의 정립과 정립된 원칙의 실현은 그 원칙이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한 공간과 실체의 범위가 작은 규모일수록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가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간의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검토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삶 속에서 당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표들과 현실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지향점 하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서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을 지방입법으로서의 조례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실태조사의 목적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 문제는 당해 지방의 주민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지방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기 지방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각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sup>2)</sup>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효력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제정상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만, 조례 제정에서의 법률유보는 명령 또는 규칙제정에서의 법률유보와 달리 지방자치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내용·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헌법 제117조 제1항.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2008), 855면.

목적·범위 등에서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등과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의 위임은 항상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특정되어 위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성질에 비추어 중앙정부가 어떤 사항에 대한 규율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授權이 가능한 것<sup>3)</sup>이며,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이라는 것과 지방자치의 성질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상 합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된 근거가 되어 준다.

이처럼 조례는 한 국가의 전체적인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고유 사무에 관해서 공동체 자체의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제정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존재의의와 검토의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의 조례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부산광역시라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품어 안기 위한 인권적 노력과 실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행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의 실태를 인권적 관점에

---

3) 헌재결 1995. 4. 20, 92헌마264 참조.

4)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제2호(2008), 188면.

서 평가하고, 이후 새로운 조례의 제정 여부와 조례의 형태, 바람직한 조례의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분석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 3. 실태조사의 방법(연구방법)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sup>5)</sup>상에서 검색 가능한 부산광역시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평가대상으로 선별함에 있어서는 조례 자체에 인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인권의 언급은 없을지라도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평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대상으로 선정된 각 조례들을 다시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제정조례로 구분하고, 상위 법률의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조칙들에 대해서는 위임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구체화 작업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 고유의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제정조례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체의 고유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sup>6)</sup>.

## II. 인권조례 실태조사와 평가를 위한 전제적 논의

---

5) <http://www.elis.go.kr>

6) 류지태 외, 지방자치 조례·규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4)/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2008) 등의 방법론 참조.

## 1. 인권조례의 의의와 의미

인권조례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안 중의 한 가지 형태이다. 특히나 인권의 정의와 정신, 보호 방향,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등을 그 안에 담아냄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인권의 구체화와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즉 지역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지역공동생활 근거에서 인권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사회문화를 유도해냄으로써 인권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실천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하여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통합분위기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향점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인권선언'의 채택이 있을 수 있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의 인권선언의 공포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인권개념의 확산과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후의 지역공동체 자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의의를 갖는다.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공포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예<sup>7)</sup>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8)</sup>. 하지만 해당 지역 공동체만의 정서와 문화, 구성원들의 인식수준과 개선 가능성의 정도 등 지역을 단위로 성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현실과 의지가 고유하게 반영된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은 실천적인 면에서 그리고 상징적인 면에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인권조례의 유형은 관련 쟁점의 구체성이나 내용의 특정성 등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9)</sup>. 하

7) 友永健三, 인권조례제정운동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2003), 85면.

8)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선언을 공포한 예를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그 밖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인권사랑 한마당(2005. 12. 10)에서 "인권도시 진주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나는 특정한 쟁점을 다룸으로써 관련된 구체적인 집단이나 사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부문별 인권조례'의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례는 특정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집단,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자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행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 사회 내의 인권상황의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 계획 등 지역 사회 자체를 기준으로 구성원 전체의 인권 증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로서 '포괄적 인권조례'의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술적인 내용을 담는 부문별 조례 유형과는 달리 지역 사회 전체를 인권친화적 구조와 인권증진을 위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둔 조례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비교적인 의미에서 후자의 조례 유형은 전자의 조례 유형에 비해서 다소간 선언적인 면이 강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시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의 원칙을 수립하고 지향점을 정립하는 지역 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한 골격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미: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전체적 논의

### (1) 사회적 약자

사회현상을 특정 사회집단의 관점으로부터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현존 사회의 도덕적·개혁적 과제를 현출하기 위한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the socially vulnerable)'이다. 이 용어는 학술적이거나 전

---

9) 김중섭,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진주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2007, 겨울호), 38-39면.

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나 집단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어떤 말 보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 용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연상하거나 사고하게 되는 의미의 공유범위 만큼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은 바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각 경우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약자라는 단어 앞에 위치한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갖게 되는 다양한 함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의미로서의 사회적 약자는 '관계적 약자'의 의미이다<sup>10</sup>). 이 맥락에서의 사회적 약자란 흔히 하급자(the subordinate)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로서, 사회 속에서 강자들이 만든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과 빈약한 자원적 요소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인격적 온전성을 사회 속에서 강한 힘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관계로부터 독립시킬 수 없는 사람들과 대안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적 혹은 관계적 자원(재력과 기회 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관계에서의 남편과 아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등을 전형적인 경우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의미의 사회적 약자란 흔히 소수집단(minority group)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규모가 숫적으로 작거나 그와 유사한 이유로 과소표상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즉 소수에 불과한 구성원들 스스로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된다고 판단하는 집단이 다른 대규모의 구성원들이 소속된 집단들이 가진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1</sup>). 어느 사회의 경우이건 인

---

10) 정혁인, 사회적 약자란 누구인가, 저널리즘 평론 2005년 2호(2005. 9), 149-150면.

11) 정혁인, 사회적 약자란 누구인가, 저널리즘 평론 2005년 2호(2005. 9), 151-152면.

구 규모가 작거나 그와 유사한 이유로 과소표상되거나 다수자들의 편견의 희생물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다수 구성원들의 기준과 문화로부터 본의와 상관 없이 배제되거나 소외됨으로써 주변인으로 머무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약자간의 정서적 사회화가 진행된 예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 혼혈인, 이주노동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특이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동성애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의미는 제도적 약자의 의미인데, 이에 의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제도와 그 제도의 지속과 유지 속에서 초래된 재난적 요소들로 인해서 취약해지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구조'와 '그것을 지탱하는 문화적 패턴'으로서의 사회제도가 가정하는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그 규칙의 적용과 실행을 통한 분배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형 신용불량자, 재개발 피해주민, 농촌총각, 장애인, 노숙자, 결식아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선정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논의되고 정의되어야 할 첫 번째 개념인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는 다의적이고 다각적인 용어이다. 때문에 어떤 의미의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조사의 출발점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숙고되어야 할 사항이며, 더불어 이하에서 논의할 소수자의 개념과도 연계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2) 소수자

---

12) 정혁인, 사회적 약자란 누구인가, 저널리즘 평론 2005년 2호(2005. 9), 152-153면.

소수자 연구에서 드러나는 소수자의 범주는 그다지 명백하지 않으며, 이는 한편으로 소수자의 범위와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수자를 특징지을만한 공통적인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 누가 소수자에 해당되는가를 정리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차별적 대우를 현실적으로 조명해 보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권 보장 운동과 그 일환으로서의 인권조례 제정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소수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소수자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나이, 인종, 경제력, 성적 취향 혹은 기타의 측면에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나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sup>13)</sup>. 한 사회의 특정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식별가능성·권력의 열세·차별적 대우의 존재·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의 네 조건이 그 기준으로 논의된다<sup>14)</sup>. 식별가능성이란 어떤 신체적·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이나 정치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차별적 대우의 존재라 함은 어떤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소수자 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고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서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보여지는 집단의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분류되느냐의 문제는 위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13)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통권 7호(2004, 4), 169면.

14) 윤인진,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2004), 404면.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함에는 보편적인 기준의 형식적 확립 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sup>15)</sup>.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는 장애인, 성매매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비정규직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배우자, 혼혈인, 미혼모,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sup>16)</sup>. 이들 소수자는 다시 장애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온 소수자 집단, 경기침체 및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된 노숙자와 같은 집단, 민주화나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동성애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문제가 관련된 판결에서 소수자를 표현하면서 '다수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discrete and insular) 집단'이라고 언급했으며<sup>17)</sup>, 그들의 기준에서 분류한 헌법상의 소수자로는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도덕적 소수자 등을 들었고<sup>18)</sup>, 그들의 판결 속에서 국가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을 유도하고 인정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들 소수자 집단들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연대하여 집단적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연대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약화되어 있어서 집단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한 소수자들도 있다<sup>19)</sup>. 따라서 소수자의 개념을 '특정한 속성에 따라 구획된 특정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비지배적이고 소

---

15) 권영설,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 법제연구 제23호(2002. 12), 13면/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통권 7호(2004. 4), 169-170면.

16)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정책 연구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108면.

17) 안경환, 미국법의 이론적 조망-윌리엄 더글라스 판사의 법사상, 고시계(1986) 참조.

18)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사회 제12권(1995. 11), 9면.

19) 윤수중, 소수자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진보평론 제20호 ([http://jreview.jinbo.net/maynews/article\\_print.php?table=organ&item=&no=450](http://jreview.jinbo.net/maynews/article_print.php?table=organ&item=&no=450)), 12-13면/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정책 연구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2007), 108-109면.

외되고 차별되어 경멸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차별성) 인하여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연대성), 은연 중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인식이 형성되어(집단성) 대다수 구성원과 평등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항거성) 부류'로 정의하는 경우<sup>20)</sup>가 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약점을 노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소수자의 경우는 인권의식의 확산과 제도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 소수자들은 제도적 보호나 연구의 대상에서조차도 이탈되거나 제외되어질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인권의 의미가 중심적 기준인 경우라면 소수자의 개념범위에는 집단화된 소수자 뿐만 아니라 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수자 개념에 관한 광의적 해석은 앞으로 부산광역시라는 지역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권리 보장과 배려 문화의 지향점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당장의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 조례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심적 기준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Ⅲ.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황

#### 1.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조례의 실태

부산광역시는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다름 없이 포괄적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비교적 볼 때 특이하게 광주광역시의 경우만 인권기본조례로 칭할 수 있을만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으며, 2007년 5월 15일자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가 그

20) 이발래,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343면.

것이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인권 관련조례의 실태 파악을 위한 대상으로 선별한 조례들은 구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술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권의 증진이나 선언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들로서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인권 관련의 경우

### 1) 서 설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 중 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직할시장애인용 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은 폐지된 바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중 법규의 제목에는 장애인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에 의한 권리보장의 대상으로 장애인이 설명되어 적용되는 조례로는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의에 따르며, 따라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고 보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본다<sup>21)</sup>.

## 2)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sup>22)</sup>

### ① 조례의 내용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복지법<sup>23)</sup>」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조례 제1조)으로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부산광역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의 면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규정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조례 제3조). 그리고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지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조례 제4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

21)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참조.

22) 제정 2005. 5. 4, 조례 제4005호.

23)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로 의결한다(조례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례 제7조).

## ② 검토 사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은 위임입법사항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검토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상위법률의 위임목적과 입법목적이 잘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첫째,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본 조례는 제3조에서 단순히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sup>24)</sup> 제12조 제2항 3호 규정에서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24)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사항을 기획·조사·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규정내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강구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특히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up>26)</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의 이러한 입법목적은 고려할 때,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위촉하게 되는 위원 수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장애인의 몫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장애인으로서의 약자의 지위와 여성으로서의 약자의 지위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sup>27)</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sup>28)</sup>이 자기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

25) 김정열 외,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참조.

26) 장애인 복지법 제9조 제2항 참조.

27) 제정 2009. 2. 4, 조례 제4352호

28)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sup>29)</sup>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부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부산광역시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추진방향,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제4조).

부산광역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 증진, 여성 중증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그 밖에 홍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 또한 부산광역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동 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29)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수 있다(제7조). 한편으로 부산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제8조).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공포일인 2009년 2월 4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의 규정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이 주가 될 수 밖에 없고 다시 이러한 부분은 부산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능력과 운용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주기적으로 조사발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립도라는 면에서 볼 때, 그만큼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의 부담은 실제적이고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위임규정들이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up>30)</sup>.’의 “-- 해야 한다”는 규정의 주문이 본 조례에서

---

30)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참조.

는 “부산광역시장은 ---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형식으로 유예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때문에 자칫 본 조례의 규정태도상 좋은 목적의 실현상의 당위성이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현안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조례규정과는 달리 실행시일을 연기하게 되거나 집행력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53조가 규정하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례상의 규정이 없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그친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장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이 경우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sup>31)</sup>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sup>32)</sup>에 대해서도 상세한

---

31) 개정 2008. 2. 29.

언급이 없어서 위임입법의 체계에서 이것은 중대한 입법불비사항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부작위적 행태라고 하겠다.

#### 4)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sup>32)</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부산광역시금두리스포츠센터(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와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한편 장애인체육시설이 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 신체적 기능회복 및 재활 등 복지증진 사업,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사업,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전문체육훈련의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고(제3조),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 납부 및 감면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제6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법

32)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제40조 등 참조.

33) 이 조례는 1999년 5월 20일에 조례 제3534호로 제정된 후,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의해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일부 개정, 2007년 10월 31일 전문개정되어 조례 제4207호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5일 일부개정되어 조례 제4321호로 되어 있다.

인이 그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이거나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전국단위 또는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장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7조).

또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9조). 그리고 이러한 위탁계약에 의하는 시설운영의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것과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체육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10조). 대개의 경우에 장애인체육시설 등은 위탁경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정하고 있다. 즉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11조). 그리고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 ② 검토 사항

조례의 입법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상의 타당성이나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적실성 여부는 당해 목적이 판단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검토기준에 의할 때,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견비해야만 하는 규정내용은 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타 영리업체가 아닌 자들이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자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에 장애인체육시설 등은 위탁경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정해 두었는데, 즉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것이다. 하지만 규정내용상으로는 지도와 감독의 횟수가 최

하한으로 규정되어 최소 한번이라는 것이 실제로 형식적인 지도와 감독으로서의 1번의 횡수가 면책사유가 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지도되고 감독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매년 1번 또는 그 이상의 횡수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면밀하고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적 차원에서도 적정 규모의 손해배상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손해배상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해야 할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 5)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sup>34)</sup>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업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확약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원천적인 불평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sup>35)</sup>의 하나로 여러 국가에서

34) 1995년 6월 5일 조례 제3218호(제정), 2001년 7월 19일 조례 제3709호(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제명떠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일부개정).

35) 임지봉,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와 實質的 平等, 法曹 제52권 제8호, 통권 제563호(2003. 8) 101

인정되어 온 유형<sup>36)</sup>이라고 할 것이다.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sup>37)</sup>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장애인에게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청사,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산광역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안의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다른 법령 사항과의 충돌상황을 정리해 두고 있다(제2조).

부산광역시장, 사업소장 또는 지방공사사장 등의 "설치자"는 이상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고해야 하고(제3조), 설치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계약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함)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또한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 안에서 일반인보다 우

---

면 이하 참조.

36) 장창업 외 3인,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12), 6-65면.

37)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구법상의 제38조로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이 2008년 2월에 개정되어 장애인의 생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지정된 장애인과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각각의 순서로 정하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5조). 그리고 당해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과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자의 의무로 규정하였다(제6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에 의거할 때 우혜자가 되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입장은 규정 내용 마다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조례에 의하면 설치자인 부산광역시 등은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공고의 기간을 조례상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sup>38)</sup>, 신청대상자인 장애인과 그들의 보호자가 충분히 사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전공고기간이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또한 사전공고의 방법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 해당조례에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공고기간이 적절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고의 방법이 신청대상자들에 대한 인지효과가 약하거나 미미한 경우라면 제도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 것이므로, 장애인 등 해당 신청대상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을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두 번째, 이 조례에서는 설치자의 50% 범위 안에서의 우선 계약의 내

---

38)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비교: 시장·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용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된 장애인과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각각의 순서로 정하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와 50% 범위 내에서의 우선 계약에 해당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방안으로서의 신청사항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자와 신청사항 건수 등 결정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여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6)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sup>39)</sup>

이 조례는 상위법률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위임입법의 내용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독자적인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21세기의 새로운 권리로서의 환경권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한 조례라고 할 것이다. 보행권의 확보와 개선은 각 시민들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실체화해 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절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토의 가치가 존재한다.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sup>40)</sup> 확보와 보행환경<sup>41)</sup> 개선에 관한

39) 2000년 10월 26일 조례 제3652호로 제정, 2004년 3월 11일 조례 제3912호(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40)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를 말한다.

41)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제1조), 부산광역시장에 대하여 보행약자<sup>42)</sup>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 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 책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아울러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는 것,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5조).

그리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제6조). 마지막으로

---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42)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로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sup>43)</sup>을 정하고 있다(제7조).

## ② 검토 사항

보행약자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들의 보행권<sup>44)</sup>을 보장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정책실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조례는,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sup>45)</sup>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관련 조례로 통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0년 제정 이후로 독립적인 조례로서 광의적인 이동편의사항과의 관련성은 인정되 보행권이라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 보호하고자 한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계획수립과 정책실행이라는 면에서 양 조례의 통합, 폐지도 일견 합리적일 수 있으나, 다수 언덕길 지형의 존재와 협소한 도로 사정 등 부산광역시만의 특유한 보행환경을 고려할 때 보행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산광역시만의 자치행정적 요소로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43)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4) 보행권은 사실상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그 처음이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포함되었던 바, 서울, 부산, 대전, 수원, 울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45)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조례는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는 것,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선언문과 같이 단순히 선언적 성격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의 불안감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의 보행권과 보행 환경 시책 등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범위와 행사방법이라든가, 시민의 참여 및 협력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그 이후로 입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야 하는 보호자들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시 당국의 시책들과 노력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알권리의 행사방법이 구체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시장이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됨으로써 단체장의 근무기간에 따른 단발마적인 계획수립에 그칠 수 있는 우려를 갖게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계획내용임엔 틀림없지만, 구조의 복잡성이나 광범위함이 계획수립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일 수는 없다. 적어도 선거에 의해 임명된 주민의 대표로서의 시장이 그의 재임기간 동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거나 간에 당해 지역의 사정변경과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가 단체장의 임기 동안 적어도 2번은 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이동권<sup>46)</sup>을 가지며, 이러한 이동권 그 중에서도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권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례에 있어서 보행우선구역 지정이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어야 한다고 본다.

## 7)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sup>47)</sup>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의거한 자치법규로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sup>48)</sup>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sup>49)</sup>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다(제3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참조.

47)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96호로 제정됨.

48)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49)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으며(제4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sup>50)</sup>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부산광역시장<sup>51)</sup>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임을 명시하였고,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와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정해진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제6조).

한편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을 허용하였다(제7조).

## ② 검토 사항

---

50)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것<sup>51)</sup>이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입법임에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sup>52)</sup>나 진주시의 유사조례들과 비교할 때 현행 부산광역시

51)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참조.

52)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08년 5월 8일 조례 제982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부시장, 교통업무담당국장, 복지여성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업무담당위원회 및 복지여성업무담당위원회 소속 시의원 2인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많은 부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에 서기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6조 (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자문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도입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이동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설치와 운영, 기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입법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는 위임입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본 조례 자체에 대한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2)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

### 1) 서 설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 중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있다. 한편 저소득주민에 관련된 조례들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 등은 폐지되었다. 그 외에는 진주시 조례 중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나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와 같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다른 형태의 조례들을 두고 있지 않다.

## 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sup>53)</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나 큰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인 차상위계층,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이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한다(제2조).

이 조례에 따라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장 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장애인재활수당, 명절위로금 그 밖에 필요한 부가급여으로 구분되며, 이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별로 그 지급기준과 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시장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53) 1996년 11월 22일 조례 제3339호로 제정. 2004년 1월 29일 조례 제3900호로 전문개정. 2004년 11월 4일 조례 제3962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7년 10월 31일 조례 제4208호로 전문개정됨.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 한편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란 자연재해가 아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 자기의 과실이 아닌 화재·가스폭발 등으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창고, 판매시설, 교육장 등 자활기반시설 설치 및 확보 비용, 자활을 위한 교육 또는 취업알선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또한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제3조 제4항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술된 보고가 있는 경우 피해 정도와 사고를 당한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

## ② 검토 사항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물질적으로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부산광역시의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

다. 하지만 지원대상자의 면에서 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생활이 곤궁해진 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같이 생활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거나 명확한 자들에 대한 지원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국가원리의 원칙적 태도와 같이 우선적으로 주민의 자생력이 증시되고 그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호가 있게 되는 식의 구조가 자활지원의 면에서 중요하지만, 자활기반을 다지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지원의 내용을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 뿐만 아니라 연말이나 기타 생활고를 겪는 자들에게 지원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시기를 재고하거나 긴급 구호비와 같은 상세한 정도의 내용들을 상술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sup>54)</sup>

54) 1995년 1월 1일 조례 제3151호로 제정. 1995년 3월 18일 조례 제3191호로 일부개정. 1995년 10월 13일 조례 제3231호로 일부개정. 1996년 1월 12일 조례 제3265호로 일부개정. 1996년 2월 23일 조례 제3277호로 일부개정. 1996년 6월 14일 조례 제3305호로 일부개정. 1997년 1월 10일 조례 제3357호로 일부개정. 1997년 2월 21일 조례 제3368호로 일부개정. 1997년 5월 15일 조례 제3382호로 일부개정.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3417호로 일부개정. 1998년 5월 7일 조례 제3448호로 일부개정. 1998년 6월 29일 조례 제3455호로 일부개정. 1998년 8월 13일 조례 제3467호로 일부개정. 1998년 11월 19일 조례 제3488호로 일부개정. 1998년 12월 31일 조례 제3509호로 일부개정. 1999년 5월 20일 조례 제3530호로 일부개정. 2000년 3월 16일 조례 제3612호로 일부개정. 2000년 12월 28일 조례 제3668호로 전문개정. 2001년 6월 21일 조례 제3701호로 일부개정. 2001년 8월 2일 조례 제3714호로 일부개정. 2001년 9월 13일 조례 제3722호로 일부개정. 2002년 3월 21일 조례 제3767호로 일부개정. 2003년 3월 13일 조례 제3832호로 일부개정. 2003년 9월 18일 조례 제3866호로 일부개정. 2003년 12월 24일 조례 제3885호로 전문개정. 2004년 3월 11일 조례 제3912호(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 2004년 7월 8일 조례 제3937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5호로 일부개정. 2006년 1월 4일 조례 제4051호로 일부개정. 2006년 3월 8일 조례 제4067호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90호(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91호로 일부개정. 2006년 12월 27일 조례 제4138호로 일부개정. 2007년 3월 14일 조례 제4158호로 일부개정. 2007년 12월 26일 조례 제4218호로 일부개정. 2008년 1월 1일 조례 제4233호(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5월 7일 조례 제4267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로 일부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감면의 내용으로 먼저 사회복지적 차원의 감면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2조)과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4조), 한센 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제5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5조의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제6조),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7조)이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제10조)이며, 세 번째로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제11조),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12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2조의 2), 화물자동차의 택배용 차량 전환에 대한 감면(제12조의 3)이 있고, 네 번째로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주택에 대한 감면(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4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17조),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제18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제20조),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제23조), 벤

---

개정. 2008년 7월 30일 조례 제4290호로 일부개정. 2008년 12월 31일 조례 제4331호로 일부 개정.

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제24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25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제27조),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제28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제29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0조), 부산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제30조의 2),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면(제30조의 3), 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한 감면(제30조의 4), 이전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제30조의 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30조의 6)이 규정되어 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3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제3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제32조의 2)을 두고 있다.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감면내용을 유형화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감면 내용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한센정착농원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부산광역시의료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생활유형상 저소득일 수 밖에 없거나 그런 처지로 전락될 위험성이 인정되는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민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감면내용으로 주택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비추어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감면조치로서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과 농어촌주택개량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sup>55)</sup>

##### ① 조례의 내용<sup>56)</sup>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는데(제2조의 2),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제3조).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 그리고 조례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정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시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별정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이 재직 중 사망하였을 때 사

---

55) 1999년 12월 30일 조례 제3582호로 제정. 2000년 12월 28일 조례 제3671호로 일부개정. 2002년 11월 28일 조례 제3812호로 일부개정. 2003년 10월 16일 조례 제3873호(부산광역시 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제명 띄어쓰기등일괄 개정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2월 1일 조례 제4060호(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일부개정. 2007년 10월 31일 조례 제4209호로 일부개정. 2008년 7월 7일 조례 제4283호로 일부개정됨.

56)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부산광역시장학금기금및지급조례, 부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각각 폐지되었다.

망당시 재학 중인 자녀 중 1인,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sup>57)</sup> 지급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에 의한 보장비용 부담 등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정하였다. 다음으로 노인<sup>58)</sup>복지계정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 재가노인복지사업,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sup>59)</sup>복지계정은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용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과, 자활계정에 대해서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단, 인건비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자활사업

57)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자녀에게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8)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9)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하였다(제5조).

한편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구·군 중 하나이며(제6조), 이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7조). 이와 같이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였다(제8조). 이 외에도 자금의 대여(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제10조), 신용보증비용(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제14조)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와 목적고과 대상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저출산대책이 추가되어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사회 전반적인 복지대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본기금의 설치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기금이 조례내용의 실현에 소요되는 광의의

복지사항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금 운용과 관리를 실제 사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관련해서도 조례상의 개별 조항의 내용들이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자활계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규정처럼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담당과장으로 특정해 두고 기금출납원의 경우만을 각각 사회복지계정은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 자활계정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담당 영역별 전문성은 담당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출납원의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분임기금운용관의 경우에도 계정별 담당업무과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sup>60)</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

---

60) 2008년 12월 31일 조례 제4334호로 제정됨.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맹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무의탁자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되었다.

리고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주요기능(제2조)과 부산광역시장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기준(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도 시장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정된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하였다(제4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를 준용하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러므로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규정하였다(제6조와 제7조). 그리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며, 때문에 조례의 입법목적으로부터 이미 내재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위탁의 궁극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상위법과 조례에서의 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시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사회복지 차원의 필요가 제기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들이 기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되고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정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한 바 있다<sup>61)</sup>.

비교해 볼 때,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에서는 시설의 위탁시에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민간위탁심의 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은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sup>62)</sup>.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p>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6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참조.

6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참조.

<p>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p> <p>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p> <p>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날까지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p> <p>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p> <p>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p> <p>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p>
---	--

이러한 입법규정의 내용은 적어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위원 후보는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는 조례에서 단순히 4급이상의 공무원만을

지정하고 있음에 그치며, 그 외의 위원 선정 후보에 관해서도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와 같이 사회복지이념에 적합한 전문가 또는 해당영역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상위규칙의 내용과는 달리 단순히 대학교수·회계사·변호사 등의 특정직역의 전문가들만을 민간위탁관련분야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 그친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는 조례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실성이 없으며,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sup>63)</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지대입비·건축비·시설기능보강비·시설 운영비(이하 “보조금”이라 함)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고(제2조), 부산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

63) 2007년 10월 31일 조례 제4210호로 제정됨.

사를 미리 요청하여야 하고,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시설의 지역적 균형과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타당성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계획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때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조).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한 시설별 사업구역을 설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제5조), 시설의 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설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을 해마다 보조금 최초교부 신청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한편 구청장은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고, 시장은 게재사항 중 주요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제7조). 시설의 장은 조례 규정상의 사항<sup>64)</sup>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제8조).

시장은 시설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보조금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고객만족도 등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1항

---

64) 기본업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절차,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에 따라 시설평가를 하는 해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이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9조). 그리고 시장은 시설의 평가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현행 조례들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자체에 관한 것과는 분리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라는 점에서 부산광역시만의 특징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는 부산 지역내의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책무를 이행할 것을 입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본 취지는 복지원리의 실현이 수요자의 우선적 자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지원이라는 구조에 입각하는 것<sup>65)</sup>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미리 요청하여야 하고,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타당성 심사요청을 받은 날

---

65)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2007), 제1장 참조.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계획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를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때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은 보조금지급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등의 의견서 작성과 시장의 타당성 심사 결과는 무엇보다도 심사과정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어떠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지사항이 예고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점이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절차상의 공정성과 정당성 요청의 측면에서 볼 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이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재하도록 한 것과 시장이 게재사항 중 주요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잖은 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와는 달리 부산광역시장의 주요사항 공시 문제는 할 수 있음에 그치는 소극적인 입법내용이어서 사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 7) 기타 관련 조례

### 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sup>66)</sup>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7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66) 2008년 1월 1일 조례 제4042호로 제정됨.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조례의 내용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한 정책집행을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와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주거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두라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인권과 관련된 조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②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67)

이 조례 또한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법규의 내용을 실현해 하기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례로서 분류하였다.

## (3) 노인의 인권 관련 조례

67) 1977년 1월 12일 조례 제1044호로 제정. 1979년 4월 13일 조례 제1333호로 일부개정. 1982년 1월 23일 조례 제1670호로 일부개정. 1988년 4월 30일 조례 제2362호로 전문개정. 1989년 10월 13일 조례 제2630호로 일부개정. 1993년 4월 23일 조례 제3009호로 일부개정. 1998년 9월 15일 조례 제3475호(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부개정. 1998년 11월 19일 조례 제3490호(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등의개정조례)로 일부개정. 2002년 11월 28일 조례 제3813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2월 1일 조례 제406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일부개정됨.

## 1) 서 설

사회적 약자로서의 대표적 유형임과 동시에 의학과 기술력의 발전에 따른 노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권리보장과 배려가 입법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89년, 1993년, 1997년, 1999년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先가정보호·後사회복지라는 정책기조가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 법에 기초해서 실시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한쪽 귀퉁이에 치우친 수습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행 부산광역시의 조례들 중 노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내용이 입안된 관련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을 뿐, 그 밖에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금 등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 속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다. 때문에 해당 조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미 살핀 바 있다. 한편 기존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노인 관련 조례들로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직제규칙’ 등이 있다.

## 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sup>68)</sup>

68) 2004년 1월 29일 조례 제3903호로 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제명뛰어쓰기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치매<sup>69)</sup>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제1병원(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74-26)과 제2병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330)이 있다(제2조).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sup>70)</sup>, 그 밖에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sup>71)</sup>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부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

치매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별표에 따른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부터 5군까지 판정을 받은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노인환자의 입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노인성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

등일괄개정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11월 16일 조례 제4042호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9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5월 7일 조례 제426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12월 31일 조례 제4336호로 일부개정됨.

69)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70) 개정 2008. 12. 31.

71) 개정 2008. 12. 31.

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제5조).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으로 병원급·요양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에는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근무체제·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등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병원을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6조). 한편 시장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제7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손·망실시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제8조).

이 조례는 수탁자의 회계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즉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제10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sup>72)</sup>과 의료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며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의 다른 의료복지시설과는 달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72)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도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와 달리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노인전문병원 입소대상자에 관해서 치매환자와 노인환자로 구분하고 치매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별표에 따른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부터 5군까지 판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노인환자의 입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노인성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상위법 규정상의 노인전문병원 입소대상자의 범위와 차이를 보인다. 즉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범위가 축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치매환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임종을 앞둔 노인환자의 경우는 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규가 반드시 상위법령의 위임내용을 그대로 구체화해야만 한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sup>73)</sup>, 적어도 노인복지와 더 나아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공동체의 복지까지도 고려<sup>74)</sup>하고 있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거주노인의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고도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유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입소대상범위를 상위법규와 같은 정도까지는 넓게 인정해야 한다.

또한 조례는 수탁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7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2008) 참조.

74) 심재호,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복지동향(2005. 5), 23면.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원노인 환자들에 대한 직원이나 간호사에 의한 매일 더 나아가 수시점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방임여부와 수탁자의 시설의 적합성, 적정한 규모의 직원수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중요한 요소들<sup>75)</sup>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 (4)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 1) 서 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현재적인 의미와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성장과 발달의 과제가 중요하다. 1990년부터 발효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무차별의 원칙과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을 천명하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4가지 주요한 인권영역을 제시하고 있다<sup>76)</sup>. 이러한 원칙을 전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논의할 때, 다수의 실태조사와 연구 속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들은 아동학대와 방임,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문제, 취약한 여건의 청소년에 대한 착취문제, 청소년 노동 보호문제, 학교에서의 인권문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등이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산광역시 현행 조례 중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유효한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

75) 정경희 외,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3)/ 김한곤, 노인학대의 원인과 전망, 노인학연구 제4집(2003)/ 최성재 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3) 등 참조.

76) 남기철, 아동·청소년의 인권, 복지동향(2005. 5), 8면 이하 참조.

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관련 조례들로는 부산시아동상담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직제규칙, 부산직할시아동복지사업소직제규칙,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 부산직할시아동복지사업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부산시아동복지사업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있었다.

##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sup>77)</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sup>78)</sup>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sup>79)</sup>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에 대해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것과 보육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

77) 2004년 7월 8일 조례 제3941호로 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6월 8일 조례 제4010호로 일부개정. 2008년 11월 5일 조례 제4306호로 일부개정됨.

78)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79)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고 계획수립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책무로 부과하고 있다(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를 두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sup>80)</sup> 대표, 보육시설의 장 대표, 시민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시장이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였다(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6조).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들, 즉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sup>81)</sup>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sup>82)</sup>.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sup>83)</sup> 각 호의 어

80)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1)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8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시와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

83)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한편 시장은 법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기타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에 두는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데, 다만,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지만,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시설의 장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확대·운영할 수 있으며(제15조), 시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

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고(제16조),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방과 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7조)고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지만,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제19조). 그리고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제20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보육교사 교육비,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형·휴일 보육시설의 운영비,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 등에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시설내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제22조). 그리고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였다.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은 보육관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호자는 물론이고 보호자에 딸린 개체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서의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보육조례는 보육교사 대표나 보호자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것은 상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산광역시의 자체 규정으로 다수의 보육교사나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를 위촉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반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들의 광범위한 범위에 비할 때 매년 1회의 정기회수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보육환경의 변화와 필요성을 시기적절하게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2번의 정기회는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정족수의 숫자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행정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비견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임시회 요구 정족수의 수를 재적위원 4분의 1로 조정하

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부산광역시장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는 운영위원을 각각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시설의 장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을 그 임기와 구성성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적어도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심의함에 있어서는 보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 보호자의 경험과 현실적 요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하며, 보육전문가의 객관적 기준 또한 심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범주의 대표 1인 정도를 고정하는 현행 규정내용 보다는 적어도 한 범주당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대표성과 다양성을 고루 반영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2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확대·운영할 수 있으며(제15조), 시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고(제16조),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방과 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7조)고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지만,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제19조). 그리고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제20조).

적어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육지원의 경우들은 영아·장애아 보육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의 경우와 같이 복지차원의 논의만이 아닌 생존적·인간으로서의 최소·최저의 기본적 보육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들이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보다 사항의 선후를 검토해서 필수적인 보조금 지급의 경우와 재량적인 보조금 지급의 경우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차원의 정책과 기준들은 재량적 권한에 의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인 처리대상으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점과 시당국으로부터의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행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적어도 조례 안에 수용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sup>84)</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

---

84) 1998년 12월 31일 조례 제3501호로 제정. 1999년 7월 29일 조례 제3551호로 일부개정. 2003년 3월 13일 조례 제3835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1월 4일 조례 제4055호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9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일부개정됨.

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아동,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이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각각이며, 부산광역시장은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시장이 시설이용자 중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경우에 대하여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제2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용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이 학생단체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소속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

나 전대하는 행위,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5조). 한편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천재지변·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6조).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지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8조). 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는데,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제9조).

시장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상의 자문 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10조). 시장은 센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기타 센터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시설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나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또는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 ~ 제12조). 시장은 조례에 정해진 일정한 권한을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한다(제13조).

## ② 검토 사항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상의 자문 등을 구해야 할 상시적인 필요성이 있고 해당 자문기구는 임의적인 기구라 아니라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필수적인 기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례에는 시장의 판단에 기한 임의적 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센터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 비영리 개인의 경우에 각각 어떠한 조건 하에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자의 경우에 현행 조례 하에서는 센터시설의 전부인가 일부인가의 차이

이외에는 구분점이 크지 않은 관계로, 각종 복지시설의 잘못된 운영의 예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위탁운영을 허용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횡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장이나 센터장의 개인적 소양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는 재량적인 사항으로 전락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피규제자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도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sup>85)</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청소년활동<sup>86)</sup>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sup>87)</sup>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어느 하나이다(제3조).

85) 1998년 12월 31일 조례 제3498호로 제정. 1999년 12월 30일 조례 제3586호로 일부개정. 2000년 3월 16일 조례 제3614호로 일부개정.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3973호로 일부개정. 2006년 2월 1일 조례 제4062호(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4월 2일 조례 제4262호로 전문개정. 2008년 11월 5일 조례 제4308호로 일부개정됨.

86)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87)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 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및 추석으로 한다(제4조).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나 청소년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였다(제6조). 또한 시장은 1회 또는 1박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

시설을 사용하려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한편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10조).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11조).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므로,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sup>88)</sup>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주로 시설과 관련된 신청이나 계약 등 절차적인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규정대로라면 부산광역시 내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체운영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권은 단독승인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한 개인이 아닌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자들의 시설이용 및 운영이 시장 개인의 재량적 판단에만 맡겨지는 것은 행정절차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다수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나 회의체의 공동심의

---

88) 1998년 12월 31일 규칙 제3203호로 제정. 2003년 12월 24일 규칙 제3420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규칙 제3473호(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로 일부개정. 2008년 5월 7일 규칙 제3591호로 전문개정됨.

및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5)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sup>89)</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나 청소년육성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sup>90)</sup>,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sup>91)</sup>에서 추천하는 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89) 1997년 1월 10일 조례 제3355호로 제정. 1998년 9월 15일 조례 제3475호(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부개정. 1998년 11월 19일 조례 제3490호(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로 일부개정. 2001년 2월 15일 조례 제3678호(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부개정. 2003년 10월 16일 조례 제3873호(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2월 1일 조례 제4062호로 일부개정. 2008년 7월 7일 조례 제4277호로 일부개정됨.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3011호, 93. 4. 23),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조례 제3202호, 95. 4. 17),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2731호, 90. 11. 5)는 폐지하였다.

90)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1)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계획의 수립이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제9조),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청소년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시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 협의회는 시 관할 지역내에 두어야 하고(제13조),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이나 국내 및 외국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시로 부터의 위탁사업,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이다(제14조). 협의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제16조).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는데(제18조), 기금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19조).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은 해당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제20조). 기금의 용도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이나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청소년단체 및 협의회 활동지원, 모범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 청소년교류의 지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청소년의 복지·보호·선도 및 상담, 청소년의 체육 및 문화 진흥,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한다(제21조). 각 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범위, 대상자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제22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정책관을,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육성기금업무담당사무관을 지정하였다(제24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내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사정을 반영한 각자의 규정

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며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에도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촉사유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영역의 고유한 사정과 지역문화가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나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혹은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등과 같은 해당 사유를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 6)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sup>92)</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영유아<sup>93)</sup>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시설종사자<sup>94)</sup>는 부산광역시장

92) 1970년 12월 31일 조례 제496호로 전문개정. 1974년 10월 30일 조례 제811호로 전문개정. 1976년 5월 4일 조례 제976호로 일부개정. 1977년 4월 4일 조례 제1115호로 일부개정. 1979년 1월 27일 조례 제1291호로 일부개정. 1981년 9월 30일 조례 제1579호로 일부개정.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3162호로 전문개정. 1998년 12월 31일 조례 제3502호(수입증지조례등)로 일부개정. 2004년 4월 22일 조례 제3925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6월 8일 조례 제4011호로 일부개정. 2006년 1월 4일 조례 제4056호로 일부개정. 2008년 11월 5일 조례 제4307호로 전문개정됨.

9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 임면하지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제4조),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할 수 없다(제5조). 한편 시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조).

## ② 검토 사항

공동체의 미래세대로서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법의 목적이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sup>94)</sup>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

94)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95)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러한 보육이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책무사항이다.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되며,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여야만 영유아의 인간답게 살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기 어렵거나 보장될 수 없는 지역적 환경을 구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다만,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또는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 규정을 모범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의 이 조례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의 원칙이나 방법,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위 입법법의 원칙에서 볼 때 입법흡결의 요소라고 하겠다.

## 7) 기 타

부산광역시 현행 조례들 중 이상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 어린이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발효된 조례들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다. 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후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관련인권의 인권보장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에 대한 위험상황이나 요소인 교통안전을 환경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조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5) 여성 인권 관련 조례

### 1) 서 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상이 바로 여성이다.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 있는 공동체에 의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문화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개혁운동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꾸려내는 여러 공동체들 중 가장 기본적인 사회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중심에 자리잡을 수 없었던 여성의 제자리찾기와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들을 부산광역시에서 현재 유효한 조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효력있는 현행 여성 인권 관련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있다. 한편 이전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부산광역시의 조례들로는 부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조례,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이 있었다.

##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sup>96)</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설치한다(제2조).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기금은 조성되며(제3조), 기금은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의료비·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의 용도로 운용한

---

96) 1995년 8월 14일 조례 제3230호로 제정. 1997년 10월 30일 조례 제3407호로 일부개정. 1998년 9월 15일 조례 제3475호(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부개정. 1998년 11월 19일 조례 제3490호(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로 일부개정. 2000년 2월 17일 조례 제3608호로 전문개정. 2003년 10월 16일 조례 제3873호(부산광역시기금설치 및 관리기본조례)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88호(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7월 7일 조례 제4276호로 전문개정.

다(제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6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정책관을,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지원기금업무담당사무관을 지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7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금 운용과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간주하여 심의하게 하므로 여성과 가족 관련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심의·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3)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sup>97)</sup>

97) 2003년 12월 24일 조례 제3892호로 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2월 1일 조례 제406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일부개정.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4088호(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7월 7일 조례 제4276호(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7월 7일 조례 제427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일부개정됨.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및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각각 폐지되었다.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sup>98)</sup>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제3조), 모든 시민도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4조), 부산광역시장 및 소속기관<sup>99)</sup>·투자기관<sup>100)</sup>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5조).

부산광역시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의 여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여성정책의 추진목표(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주요 여성정책(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단체 및 여성사회교육기관 지도·육성,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제6

98) "여성관련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99)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100)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를 말한다.

조). 또한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제8조).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해서는 우선 여성의 시정참여의 확대에 관한 것(제11조), 공적참여 촉진에 관한 것(제12조), 양성평등의식의 제고에 관한 것(제13조), 모성보호의 강화에 관한 것(제14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것(제15조), 경제활동 지원 및 여건조성에 관한 것(제16조),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것(제17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에 관한 것(제18조), 성차별의 개선 등에 관한 것(제19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제20조), 국제협력의 지원에 관한 것(제21조),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제22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것(제23조), 여성주간행사<sup>101)</sup>에 관한 것(제24조), 건강가정의 날 운영에 관한 것(제25조), 양성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에 관한 것(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01)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심의와 여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제27조)로서,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제28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자치관·여성가족정책관·기획재정관과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29조~제30조). 해촉사유<sup>102)</sup>를 규정하였고 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31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그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시장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데(제36조), 기금의

- 
- 102)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성 재원(제37조)과 용도(제38조)<sup>103)</sup>, 기금의 관리·운용(제3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40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제41조), 기금결산(제42조) 등의 규정을 두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부산여성상을 시상하는데(제44조), 여성상은 공적<sup>104)</sup>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하되,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45조). 수상대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선정하며(제46조), 수상후보자는 소속기관의 장·투자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제47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8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의 근거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 
- 103)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04)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4.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여성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이러한 이념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여성을 위한 기본조례로 선택하여 제정한 것이 여성발전 기본조례로서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 조례는 적극적 평등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당국의 정책을 말하는 것<sup>105)</sup>으로서, 연혁적·제도적으로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救濟)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적 방향과 내용이 역차별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현재까지 의미를 갖고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평등한 지위의 보장과 기회부여의 제도화는 현재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강한 사회문화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발전

---

105) 김현철, 미국 헌법상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2001) 참조.

기본조례 속에 적극적 조치 조항을 내용으로 담아 낸 부산광역시의 자치입법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sup>106)</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가족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등 각 사업을 한다(제2조).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제3조), 개발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시장은 개발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

106) 2001년 12월 6일 조례 제3731호로 제정. 2002년 3월 21일 조례 제3762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8년 4월 2일 조례 제4260호로 전문개정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개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그리고 시장은 개발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개발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6조).

## ② 검토 사항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발원 담당사무의 내용상 개발원의 활성화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조례라고 하겠다. 개발원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과 특유성은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기본적 자료와 정보, 정책의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발원의 실제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구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예산 내에서 출연금과 비용의 일부를 개발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개발원이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따라야 하는 사업의 실제적 실행이 예산의 문제로 어려워질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그 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연도 개시 4개월 내지 6개월의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실행을 확보하는 데에 실제적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한 후 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개발원에 그 시정

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조치는 객관적인 사항이지만, 부당한 사항에 대한 판단 부분은 재량적인 부분으로서 시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부당성의 판단 여부에 기한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나 소명의 기간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되는 각 경우들에 대한 시장의 처분조치의 내용도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행정의 구현책이라고 본다.

## 5)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sup>107)</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여성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산광역시여성회관과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에 적용한다(제2조).

회관의 이용에 관해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그 밖에 회관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하나이며,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3조).

---

107) 1998년 12월 31일 조례 제3497호로 제정. 2001년 2월 15일 조례 제3689호로 일부개정. 2004년 1월 29일 규칙 제3901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로 일부개정. 2007년 10월 31일 조례 제4202호로 전문개정.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또는 「모·부자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사람, 그 밖에 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제4조)와 수강료 반환의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5조)를 규정하고 있다.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시설사용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 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제6조).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예식장시설의 사용신청자의 일정한 사유<sup>108)</sup>가 인정되는 경우)할 수 있음도 규정하였다(제7조).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

---

108) 가.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다.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조). 그러므로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시설사용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또는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상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한편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이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11조).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12조).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자<sup>109)</sup>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강료 및 사용료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제13조).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

109)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제14조).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인 수탁자가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5조).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여성회관장 및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제16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여성회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시당국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내의 여성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 중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자를 열거한 규정은 광의적이거나 다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조례에서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의 차원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한 또는 퇴장의 사항이다. 더군다나 실제로 시설의 이용제한이나 퇴장의 조치는 시설물 수탁자나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행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지침이 설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과 여성 관련 주민들의 인권으로서의 제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적은 부분일지라도 소수의 여성이나 관련 시민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감당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sup>110)</sup>'을 제정해 두고 있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독립적 조례를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은 부산광역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거나 상당활동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sup>111)</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부산광역시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제2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제4조),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유아놀이방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제5조).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sup>112)</sup>하거나 경감<sup>113)</sup>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6조).

---

110) 1998년 12월 31일 규칙 제3202호로 제정. 2004년 1월 29일 규칙 제3424호로 일부개정. 2005년 2월 16일 규칙 제3473호(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로 일부개정. 2006년 11월 1일 규칙 제3530호로 일부개정. 2007년 12월 5일 규칙 제3567호로 전문개정됨.

111) 2007년 7월 11일 조례 제4190호로 제정. 2008년 7월 30일 조례 제4289호로 일부개정됨.

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등에 위탁계약에 의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제7조),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제8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한편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제10조).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1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 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

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개정 2008. 7. 3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13) 시장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성의 사회적 진출에 필요한 개발적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내의 여러 센터들의 운영은 대부분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탁받은 수탁자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 시장이 청문을 실시한 후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횡수와 보고 절차와 횡수를 정해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지도·감독·보고의 횡수는 규정해 두어야 하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감독이 아닌 실제적인 감독과 보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sup>114)</sup>

### ①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제2조). 또한 모든 시민도 저출산 문제를

114) 2008년 4월 2일 조례 제4261호로 제정됨.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전반적인 의식과 책무를 규정하였다(제3조).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였다(제4조).

부산광역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저출산종합계획에는 저출산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다자녀가정(시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의 우대 시책, 출산 및 가사분담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시장은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6조).

시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그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7조). 시장은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의 세대원의 신청이 있으면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8조). 그리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한다(제9조).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제10조).

시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1조).

## ② 검토 사항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21세기적 조례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축소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공동체 내에도 공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근거에 존재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만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더 강력한 유인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행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이 조례가 기본적인 틀임을 밝히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 대해서 5년을 주기로 하는 저출산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계획의 내용 속에 저출산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출산 및 가사분담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저출산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에도 뒤지는 저출산율로 조사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상징적인 방편으로 조례에 규정한 것이 출산지원금 지급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는 출산축하금에 불과하고, 출산 후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연계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 또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의 예로서 현행 조례 내용에서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sup>115)</sup>.

## 2.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인권관련 조례의 실태 비교 · 분석

### (1) 개 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조례 중의 인권 관련조례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

---

115) 최중암,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북대 박사학위논문(2008) 참조.

의 시작점에서 의도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부산광역시의 인권관련 조례의 실태를 정리하고 검토하되, 그 검토의 말미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한 조례의 준부와 내용에 대한 비교작업을 수행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도 하에 이하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조례를 내용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으로 연구자가 선택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울산광역시와 진주시를 택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이유는 울산광역시와 진주시는 인권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과 특정 조례들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보다 선행된 제정운동과 결실이 존재했던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부산광역시의 조례와 명칭이나 구조상 유사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표에서 생략하였다.

(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동	제1조(목적) 좌동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좌동	제2조(정의) 좌동

<p>1.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p> <p>2.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p> <p>3. "교통약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좌동</p>	<p>제3조(적용범위) 좌동</p>
<p>☞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음</p>	<p>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p> <p>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p>	<p>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좌동</p>

	<p>목표</p> <p>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p> <p>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p> <p>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 (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좌동</p>
--	---	------------------------

	<p>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행정부시장, 교통업무담당국장, 복지여성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업무담당위원회 및 복지여성업무담당위원회 소속 시의원 2인</p> <p>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p> <p>4.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회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p>	
--	---	--

<p>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p>	<p>있다.</p> <p>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에 서기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p>	<p>제6조(위원회 운영) 좌동</p> <p>제7조(수당 등) 좌동</p> <p>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p>
-------------------------------	---	---

<p>저상버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p>	<p>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 립시 법 제6조 제2항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평가계획</li> <li>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 와 개선계획</li> <li>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 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 보제공 및 개선계획</li> <li>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 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li> <li>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사업계획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 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 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p>	<p>좌동</p>
-----------------------------------	--	-----------

<p>이동지원센터의 설치</p>	<p>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p> <p>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p> <p>①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li> <li>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 정비</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저상버스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 (저상버스의 운영)</p> <p>①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p>	<p>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및 운영) 좌동</p>
-------------------	---	---------------------------------

<p>및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음</p>	<p>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p> <p>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p> <p>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p>	<p>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좌동</p>
---------------------------	--	------------------------------

	<p>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p> <p>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접수 및 자격심사</p> <p>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p> <p>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p>	<p>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좌동</p> <p>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좌동</p>
--	---	---

<p>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p> <p>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p> <p>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p>	<p>의 사무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p> <p>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p>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한다.</p>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부산과 유사</p> <p>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부산과 유사</p>
<p>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p> <p>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p> <p>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p>	<p>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p> <p>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p>	<p>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부산과 진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p>

<p>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p> <p>③ 부산광역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울산시 조례 13조에 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p> <p>제6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p>	<p>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좌동</p>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p>	<p>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좌동</p>
--	---	-------------------------------

<p>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p> <p>제7조(관리 및 운영 위탁)</p> <p>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설립한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p> <p>2.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p> <p>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p> <p>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p>	<p>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 위탁제도에 관한 규정이 12조에 있음</p>	
---	---	--

<p>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음</p>	<p>제1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7조(예산의 확보) 좌동</p>
---	--	------------------------

(3)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p>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p>	<p>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p>	<p>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이하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p>	<p>제1조 (목적) 좌동</p>	<p>제1조(목적) 좌동</p>

<p>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별도의 정의규정 없음</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에게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청사</p> <p>2.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p>	<p>별도의 정의규정 없음</p> <p>제2조(적용의 범위) 좌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만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만65세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p> <p>2. “공공시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좌동</p>
---	--	--

<p>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p> <p>3.부산광역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안의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사전공고) 부산광역시, 사업소장 또는 지방공사사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전공고) 좌동</p>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좌동</p>	<p>제4조(사전공고) 좌동</p> <p>제5조(계약신청) 좌동</p>
---	--	---

<p>1. 계약신청서 2. 삭제&lt;2001. 7. 19&gt; 3. 장애인등록증 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 함)</p> <p>제5조(우선계약) ① 설치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계약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50% 범위안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 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 로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로 지정된 장애인 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p> <p>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운 영하여야 하며, 부득히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 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 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p> <p>별도의 해지규정 없음</p>	<p>제5조(우선권 부여) 좌동</p> <p>제6조(직접운영) 좌동 부산 제6조와 내용 유 사</p> <p>별도의 해지규정 없음</p>	<p>제6조(우선계약) 좌동</p> <p>제7조(계약자의 의무) 좌동</p> <p>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	---	---

<p>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p>	<p>제7조(사용료 등) 좌동</p>	<p>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u>1.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u>  <u>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u>  <u>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u>  <u>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u></p> <p>제9조(사용료 등) 좌동</p>
---	----------------------	--

(4)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p>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p>	<p>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전문체육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좌와 유사      ≡ 부산의 체육시설이 울산의 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p>

<p>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별표로 명기</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93 349 271 436">명칭</td> <td data-bbox="271 349 502 436">부산광역시곰두리 스포츠센터</td> <td data-bbox="502 349 673 436">부산한마음스 센터</td> </tr> <tr> <td data-bbox="193 436 271 513">위치</td> <td data-bbox="271 436 502 513">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td> <td data-bbox="502 436 673 513">해운대구 1404번지</td> </tr> </table>	명칭	부산광역시곰두리 스포츠센터	부산한마음스 센터	위치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	해운대구 1404번지	
명칭	부산광역시곰두리 스포츠센터	부산한마음스 센터					
위치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	해운대구 1404번지					
<p>별도의 정의규정 없음</p>	<p>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p>						
<p>제3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 신체적 기능회복 및 재활 등 복지증진 사업</li> <li>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사업</li> <li>3.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li> <li>4. 전문체육훈련의 지원 사업</li> </ol>	<p>제4조(업무 및 기능) 좌와 유사</p>						
<p>부산의 경우는 동 조례 제4조의 이 용료 감면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 명시</p>	<p>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p>						
<p>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li> </ol>	<p>제6조(사용료) 기본적으로 좌와 유사 울산은 부산에 비해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반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음.</p>						

<p>받는 자</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 ?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료가 면제된 사람 제외)</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료가 면제된 사람 제외)</p> <p>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6.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사람</p> <p>④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p> <p>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p>	
---	--

<p>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p> <p>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p> <p>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p> <p>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p> <p>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p> <p>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p> <p>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목</p>	
---	--

<p>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p> <p>3.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전국단위 또는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p> <p>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p> <p>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p> <p>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p> <p>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③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p>	<p>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p> <p>☞ 울산은 부산에 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p> <p>② 시설을 위탁운영시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p>
--	--

<p>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체육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p> <p>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i> <li>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li> <li>3.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li> <li>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li> </ol>	<p>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 기본적으로 좌와 동일</p> <p>제8조(자체 운영규정) 좌와 유사</p>
---	--

<p>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5)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p>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p>	<p>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li> <li>2.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li> <li>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li> </ol>	<p>제1조 (목적) 좌동</p> <p>제2조(기능) 기본적으로 좌동</p> <p>제3조(구성 등) 좌동</p>

<p>풍부한 자</p> <p>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p> <p>☞ 부산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제5조에 규정</p>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부산 제5조와 동일</p> <p>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임기가 부산과 다름</p> <p>제6조(회의) 기본적으로 좌동</p> <p>제7조 (소위원회) 좌동</p>
---	--

<p>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부산은 의견 청취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고, 포괄적인 협조요청 규정(제10조)에 두고 있음.</p> <p>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p>	<p>제8조(간사 및 서기) 좌동</p> <p>☞ 울산은 제10조에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p> <p>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p>
--	---

<p>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부산에는 명문의 위원 제척사유규정이 없음</p>	<p>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	---

(6) 사회복지기금 조례

<p>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p>	<p>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자녀에게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li> <li>2."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li> <li>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기본적으로 좌동</p> <p>제2조(정의) 좌동</p>

<p>제2조의2(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다.</p>	<p>☞ <u>울산은 시장의 기금 설치 원칙에 대한 명문의 언급이 없음</u></p>
<p>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보조금</li> <li>2. 시의 출연금</li> <li>3.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4. 그 밖의 수입금</li> </ol>	<p>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보조금</li> <li>2. 울산광역시 출연금</li> <li>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li> <li>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li> <li>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li> <li>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li> <li>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li> <li>8. 기타 수입금</li> </ol>
<p>☞ <u>울산이 보다 상세하게 기금재원을 열거하고 있다.</u></p>	
<p>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u>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으로</u>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u>기초생활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u>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p>
<p>☞ <u>계정의 종류가 부산과 울산이 다름</u></p>	<p>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 <u>울산은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재적</u></p>	<p>③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p>

<p>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p>	<p>하여 재적립한다. ④ 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u>사회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u> 1.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 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다. 시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별정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이 재직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당시 재학중인 자녀중 1인 라. 실직·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에 의한 보장비용 충당 등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 재가노인복지사업</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u>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② <u>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 1.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p>

<p>4.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u>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li> <li>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li> <li>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li> <li>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li> </ol> <p>④ <u>자활계정은 다음 각호 용도로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li> <li>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li> <li>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li> <li>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li> </ol>	<p>3. 장애인·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p> <p>4. 장애인·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단체 행사 지원</p> <p>5. 장애인·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p> <p>6. 장애인·노인 자활지원</p> <p>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u>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정책</li> <li>2. 자녀의 출산과 보육</li> <li>3. 모자보건의 증진</li> <li>4. 그 밖의 각종 시책사업</li> </ol>
--	--

<p>비용</p> <p>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p> <p>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채무</p> <p>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p> <p>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p> <p>나.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단, 인건비는 제외)</p> <p>다.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p> <p>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p> <p>☞ 부산과 울산은 계정 분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두 시의 조례는 이에 따라 용도 규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p> <p>제6조(지원대상) 자활계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p>	<p>제6조(지원대상) ① 좌동</p> <p>☞ 부산 제6조와 동일한 규정임(계정의 명칭만 상이함).</p>
--	--

<p>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p>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p> <p>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p> <p>6. 구·군</p> <p>☞ 부산 조례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노인복지계정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p> <p>제7조(지원신청)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제8조(용도변경 승인)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자금의 대여) ①제5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시장이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3억원의 범위에서 결정한다.</p> <p>☞ 대여금액 범위-부산: 3억, 울산:7천만원</p> <p>② 제5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p>	<p>②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p> <p>1.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p> <p>2. 그 밖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p> <p>제7조(지원신청) 좌동</p> <p>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좌동</p> <p>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p> <p>② 좌동</p> <p>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p>
---	--

<p>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p> <p>☞ 이율-부산:연 2퍼센트, 울산:연 3퍼센트</p> <p>④ 시장은 제5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파산 또는 해산, 해체되는 때</li> <li>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li> <li>3. 제8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li> </ol> <p>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중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p>	<p>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p> <p>④ 좌동</p> <p>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원칙적으로 좌동</p>
--	--

<p>을 중지할 수 있다.</p> <p>☞ 부산의 조례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심의기구에 관하여는 부산 제12조에 정하여져 있다.</p>	<p>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li> <li>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li> <li>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④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신용보증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p>	<p>☞ 울산 조례에는 신용보증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p>
<p>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p>	

<p>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p> <p>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관 : 복지건강국장</li> <li>2. 분임기금운용관 : 사회복지담당과장</li> <li>3.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사무관(사회복지계정은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 자활계정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이 각각 관리한다)</li> </ol> <p>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기타 회계원칙-부산:일반회계, 울산: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좌동</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	--

(7)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 경우는 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와 2)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세분화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나 큰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1.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  2.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p> <p>☞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차이 있음</p> <p>제3조(지원내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2. 월동대책비</p>	<p>제1조 (목적) 원칙적으로 좌동</p> <p>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자</p> <p>제3조(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좌동</p>

<p>3. 장애인재활수당</p> <p>4. 명절위로금 그밖에 필요한 부가급여</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별로 그 지급기준과 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p> <p>③ 시장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p> <p>1. 생계비</p> <p>2. 의료비</p> <p>3. 주거비 등</p> <p>④ 제3항에서 정한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란 자연재해가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p> <p>2. 자기의 과실이 아닌 화재·가스폭발 등으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p>	<p>☞ <u>울산의 경우는 "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때"에 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음</u></p> <p><u>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u></p>
--	---

부산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군수가 결정한 자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자활지원) 시장은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창고, 판매시설, 교육장 등 자활기반시설 설치 및 확보 비용
2. 자활을 위한 교육 또는 취업알선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5조(조사 및 보고) ①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제3조

울산의 조례에는 자활지원의 대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조사 및 보고에 관한 독립적 규정이 없다.

제4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피해 정도와 사고를 당한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제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8) 보육 조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진주시 보육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동	제1조(목적) 좌동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	제2조(책임) 좌동 ☞ 울산의 경우 계획수립 의무나 수요조사·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진주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없음

<p>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시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전문가</li> <li>2. 보육교사 대표</li> <li>3. 보호자 대표</li> <li>4. 보육시설의 장 대표</li> <li>5. <u>시민단체 대표</u></li> <li>6. 관계공무원</li> </ol>	<p>제3조(설치) 좌동</p> <p>제4조(구성) ① 좌동</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보육전문가</li> <li>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li> <li>3. 보호자 대표</li> <li>4. 관계공무원</li> <li>5. <u>삭제&lt;2007·10· 9&gt;</u></li> <li>6. <u>공익을 대표하는 자</u></li> <li>7. <u>삭제&lt;2007·10· 9&gt;</u></li> </ol> <p>☞ <i>울산의 경우, 부산과는 달리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넓게 하였고,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i></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좌동</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좌동</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해당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보육 전문가</li> <li>2. 보육시설의장 대표</li> <li>3. 보육 교사 대표</li> <li>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li> <li>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li> <li>6. 관계공무원</li> </ol>
--	--	---

<p>7.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p> <p>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p> <p>부산은 위원의 임기 규정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p> <p>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li> <li>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li> <li>5.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li> <li>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li> </ol>	<p>왔다</p> <p>울산은 위원의 임기는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5조(기능) 좌동</p>	<p>진주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았다.</p> <p>③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임기 규정은 있으나 공개모집 규정은 없다.</p> <p>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li> <li>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li> <li>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li> <li>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li> <li>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li> </ol>
---	--	---

<p>7. 삭제&lt;2008. 11. 5&gt;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p> <p>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좌동</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p> <p>제8조(회의) ② 좌동</p>	<p>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호, 6호가 부산, 울산과 비교된다.</p> <p>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좌동</p>
---	--	--

<p>② 정기회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 정기회 연 횟수와 소집 요건에 관한 차이 있음.</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p>	<p>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 문서통지에 관한 규정 없다.</p> <p>④ 좌동</p> <p>☞ 심의 참여할 수 없는 사유 규정(제척사유) 없다.</p> <p>☞ 의견 청취 규정 없다.</p> <p>☞ 공개 규정 없다.</p>	<p>② 정기회는 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 문서통지에 관한 규정 없다.</p> <p>③ 좌동</p> <p>④ 부산과 동일</p> <p>⑤ 부산과 동일</p> <p>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p>
---	---	--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시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 <u>진주와는 달리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u></p> <p>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②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기타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u></p>	<p>제9조(위원의 수당) 좌동</p> <p>제10조(설치 및 운영) 좌동</p> <p>☞ <u>부산과 진주와는 달리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이거나 심사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u></p>	<p>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회의 수당) 좌동</p> <p>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좌동</p> <p>③ <u>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	---	---

<p>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1조 삭제&lt;2008. 11. 5&gt; 제12조 삭제&lt;2008. 11. 5&gt; ☞ <u>설치기준 조항 없다.</u></p> <p>제13조(구성) ① <u>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에 두는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u></p>	<p>제11조(설치기준) ① <u>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u></p> <p>② <u>시장은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u></p> <p>☞ <u>정보센터의 구성은 울산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u></p>	<p>☞ <u>설치기준 조항 없다.</u></p> <p>제8조(센터의 구성) ① <u>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u></p> <p>② <u>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u></p> <p>③ <u>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u></p>
---	--	--

<p>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센터의 구성에 관하여는 부산, 울산, 진주가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골격이나 내용상 통일되어 있지 않다.</p> <p>제14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p>		<p>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p>
---	--	--------------------------------

<p>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 울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다.</p>	<p>☞ 진주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다.</p>
<p>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대표 5. 관계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p>	<p>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p>
<p>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4.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5.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p>	<p>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p>	

<p>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한다.</p> <p>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p> <p>⑤ 보육정보센터에는 영 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p>	
--	--	--

<p>↳ 부산의 조례에는 보육 정보센터의 비용의 재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p>	<p>제14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p>	<p>제10조(센터의 재정) 좌동</p>
<p>제15조(방과 후 보육의 확대·운영)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정의)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p>	<p>제11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p>
<p>제16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제1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제17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방과 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취약지역이나 방과후의 보육에 관하여 부산, 울산, 진주는 각기 다른 제</p>		

<p>목과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p> <p>제18조 삭제&lt;2008. 11. 5&gt;</p> <p>제19조(비용의 수납)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20조(방과 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p> <p>제21조 삭제&lt;2008. 11. 5&gt;</p> <p>제22조(비용의 보조) ①</p>	<p>제18조(비용의 보조) ①</p> <p>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p>	<p>진주 조례에서는 비용에 관하여 진주 제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p>
---	---	---

<p>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 등에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li> <li>3. 보육교사 교육비</li> <li>4.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li> <li>5. 시간연장형·휴일 보육시설의 운영비</li> <li>6.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li> <li>7. 교재교구비</li> <li>8. 보육아동 급식비</li> <li>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li> </ol> <p>②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li> </ol>	<p>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아·유아·장애아 보육운영비</li> <li>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li> <li>3.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재교육비</li> <li>4. 취약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li> <li>5.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li> <li>6. 교재교구비 및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비</li> <li>7. 보육아동 급식비</li> <li>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li> </ol> <p>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	--	--

<p>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p> <p>2. 보육시설내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p> <p>☞ 부산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p> <p>☞ 부산과 울산에는 진주 조례와 같이 위탁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미흡하다.</p>	<p>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li> <li>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li> <li>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li> </ol>	<p>☞ 진주 제22조에 보조금 환수 규정이 있다.</p> <p>제12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보육시설을</p>
---	--	--

		<p>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제13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4조(수탁자의 의무)</p> <p>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	--	--

	<p>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li> <li>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li> <li>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li> <li>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li> </ol>
--	---

<p>제23조(지도·점검)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교육) 시장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p> <p>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시립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⑤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①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을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p>
--	--	---

		<p>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p> <p>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1개소 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li> <li>2.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li> <li>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li> </ol>
--	--	--

	<p>부산과 울산에는 특수보육시설의 운영 보조 등의 상세한 독립규정이 없다.</p>	<p>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②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p> <p>제20조(특수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간</p>
--	--	---

		<p>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1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p>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li> <li>2. 거짓이나 기타 부정행위로 보조금교부를 받은 때</li> <li>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li> </ol>
--	--	--

(9)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주시
-------	-------	-----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lt;2006. 2. 1&gt;</p> <p>제3조(구성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의 위촉한다.</p> <p>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p> <p>2. 청소년육성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등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del>울산은 조례 제3조에</del>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p> <p><del>부산, 울산, 진주는</del> 위원의 구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3.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p> <p>4.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p> <p>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해 심의한다</p> <p>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p> <p>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p> <p>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p> <p>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p> <p>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6. <u>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u></p> <p>7.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p> <p>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p> <p>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p> <p>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p> <p>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6. <u>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u></p> <p>7.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p> <p>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p> <p>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p> <p>4.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p> <p>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p>
<p>☞ 부산에는 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삭제&lt;2008. 7. 7&gt;</p> <p>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 <u>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부산과 진주에는 없다.</u></p>	<p>③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2인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며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li> <li>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등 침의사항을 누</li> </ol>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	--	---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여성가족정책관이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u>간사는 정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u></p> <p><del>1. 분과위 규정이 없다.</del></p>	<p>설한 때</p> <p>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좌동</p> <p>③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del>1. 울산 조례에는 제9조에 간사규정이 있다.</del></p> <p>제8조(분과위원회) 위원</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좌동</p> <p>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u>재적위원 1/3이상</u>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좌동</p> <p>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p>② <u>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u></p> <p><del>1. 분과위 규정이 없다.</del></p>
--	---	--

<p>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p> <p>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부산과 진주에는 위원회 지급경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다.</p>	<p>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9조(간사) 부산 제8조와 동일</p> <p>제10조(회의록) 좌동</p> <p>제11조(출석발언) 좌동</p> <p>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연구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9조(출석발언) 좌동</p> <p>제10조(수당 등) 좌동</p>
---	---	--

<p>[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p> <p>제12조(설립 등) ①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시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협의회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는 시 관할 지역내에 둔다.</p> <p>제14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li> <li>2. 국내 및 외국청소년과</li> </ol>	<p>[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p> <p>제13조 (구성) 좌동</p> <p>☞울산 제18조에 준용 규정 있음.</p> <p>제14조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p> <p>제15조 (사업) 좌동</p>	
--	--	--

<p>의 협력 및 교류</p> <p>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과 홍보활동</p> <p>4. 청소년문제,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p> <p>5.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p> <p>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p> <p>7. 시로 부터의 위탁사업</p> <p>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p> <p>②삭제&lt;2006. 2. 1&gt; 수익사업시 승인에 대한 규정 없음.</p> <p>제15조삭제&lt;2006. 2. 1&gt;</p> <p>제16조(협력)협의회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p> <p>제17조삭제&lt;2006. 2. 1&gt;</p> <p>제18조(기금의 설치)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한다.</p>	<p>②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6조 (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중앙부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7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

<p>제1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출연금</li> <li>2.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3. 그 밖의 수입금</li> </ol> <p>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은 해당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p> <p>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활동의 지원</li> <li>2.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li> <li>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지원</li> <li>4. 청소년단체 및 협회 등의 활동지원</li> <li>5. 모범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li> </ol>	<p>제18조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청소년 육성 기금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에는 조례의 기본 성격상 제외되어 있음.</p>	
---	--	--

<p>6. <u>청소년교류의 지원</u></p> <p>7. <u>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u></p> <p>8. <u>청소년의 복지·보호·선도 및 상담</u></p> <p>9. <u>청소년의 체육 및 문화 진흥</u></p> <p>10. <u>청소년 포상 및 격려</u></p> <p>11. <u>삭제&lt;2008. 7. 7&gt;</u></p> <p>12. <u>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u></p> <p>제22조(지원범위등)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범위, 대상자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p> <p>②삭제&lt;2008. 7. 7&gt;</p> <p>제23조삭제&lt;2008. 7. 7&gt;</p> <p>제24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기금운용관:여성가족정책관</p> <p>2.기금출납원:청소년육성기금업무담당사무관</p>		
---	--	--

제25조삭제<2008. 7. 7>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0) 여성회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여성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부산과 진주에는 본 조례상 용어의 개념정의 규정이 없음.</p>	<p>제1조(목적) 좌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사용”이라 함은 회관 시설의 사용·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2. “허가”라 함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교육수강증교부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의 보육승락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좌동</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여성회관시설에 대해 적용한다.</p> <p>1. 부산광역시여성회관</p> <p>2.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p> <p>☞ 부산과 진주의 조례에 는 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p> <p>제3조(회관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p> <p>2. 그 밖에 회관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p>	<p>3. “사용료”라 함은 회관 시설 사용료·교육수강료 또는 보육료 등을 말한다</p> <p>☞ 울산과 진주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시가 없다.</p> <p>제3조(운영시설 및 교육) 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운영시설 : 강당, 상담실, 예절실, 식당, 기술·부업교육실, 취미·교양교육실, 보육실, 생활체육실 등</p> <p>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 조리, 미용, 도배, 한복, 양장, 꽃꽂이, 서예, 생활체육, 어학, 미술, 장고 등</p> <p>제4조(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p> <p>2. 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자</p> <p>3. 기타 울산광역시장 인정하는 자</p>	<p>☞ 진주에는 회관 사용자의 범위 규정이 없음.</p>
---	---	----------------------------------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p> <p>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p> <p>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p>	<p>☞ 울산과 진주에는 회관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p>	
<p>제4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p> <p>☞ 부산에는 <u>사용허가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고 있음.</u></p> <p>① <u>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 부산은 <u>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관하여는 제7조에 서 정하고 있음.</u></p>	<p>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u>회관을 사용하고 자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u></p> <p>③ <u>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조 (사용료 및 수강료)</p> <p>☞ <u>진주에는 사용허가에 관한 명시가 없음.</u></p> <p><u>회관의 사용료는 2시간에 10만원이내, 수강료는 1월에 5만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금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u>사용 또는 교육시작일 이전까지 이의 사용 또는 수강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전액</u></p> <p>2. <u>교육시작일 이후 이를</u></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또는 「모·부자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p> <p>4. <u>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사람</u></p> <p>5. <u>그 밖에 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u></p> <p>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p>	<p>제6조(사용료 면제 및 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p> <p>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p> <p>4. 「<u>사회복지사업법</u>」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p> <p>5. 「모·부자 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부자 가정 세대</p> <p>6.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p> <p>☞ <i>부산에 비하여 울산과 진주는 명시적 면제자의 범위가 좁다.</i></p> <p>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p>	<p>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월)의 수강료</p> <p>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각종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p> <p>2.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노동부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실직자(가족을 포함)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 <i>진주는 제2조 단서에서</i></p>
---	--	---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p> <p>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p> <p>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 포기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p> <p>↳ 부산 제10조에 유사한 내용의 반환관련 조항이 중복되어 있음.</p> <p>제6조(시설의 사용허가)</p>	<p>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p> <p>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p> <p>3.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퍼센트</p> <p>4.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퍼센트</p> <p>5.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p> <p>③ 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울산은 부산과 진주에 비하여 상세하게 반환 비율까지 정하고 있음.</p>	<p>반환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정하고 있음.</p>
--	---	-------------------------------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 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p>하는 경우</p> <p>3. <u>예식장시설의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가.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다.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p> <p><u>제8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u></p> <p>1. 시설을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p> <p><u>제9조(시설사용의 정지)</u>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p>	<p>☞ <u>울산과 진주에는 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정지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u></p>	
--	---	--

<p>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p> <p>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p> <p>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p> <p>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p> <p>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p> <p>제11조(원상회복) ① 시</p>	<p>울산과 진주에는 시설</p>	
---	--------------------	--

<p>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12조(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p>	<p>의 원상회복이나 변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p> <p>제7조(사용의 구분) ① <small>☞ 진주에는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small></p> <p>제3조 제2호에 의한 교육은 시장이 매년 수립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p> <p>② 회관의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강사 등) ① 시장은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small>☞ 부산에는 회관사용의 구분이나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small></p>		

<p>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p> <p>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③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강료 및 사용료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p> <p>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p> <p>☞ 울산과 진주는 부산에 비하여 위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p>	<p>제4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 (강사위촉 및 수당 지급) ① 여성회관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	--

<p>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i> <li>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li> <li>3. 수탁자가 법인인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li> <li>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권한의 위임) 시</p>	<p>울산과 진주에는 권한</p>	
--	--------------------	--

<p>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여성회관장 및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p>	<p>위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p>	
--	----------------------------------	--

(11) 여성발전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여성관련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p> <p>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p>	<p>제1조(목적) 좌동</p> <p>☞ 울산과 진주에는 용어 정의 규정이 없음.</p>	<p>제1조(목적) 좌동</p>

<p>의한 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p> <p>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업을 말한다.</p>		
<p>제3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 부산과 울산에는 위원회 및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시장의 권한에 대한 명문 근거 규정이 없음.</p>	<p>제2조(시의 책무) 좌동</p>	<p>제2조(책무) ①좌동</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민의 책무) 좌동</p>	<p>☞ 진주 조례에는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p>
<p>제5조(적극적 조치) 부산광역시 및 소속기관·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p>	<p>제4조(적극적 조치) 울산광역시와 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p>	<p>☞ 진주 조례에는 시장과 소속투자기관장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p>

<p>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정에 의한 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i>울산의 경우는 투자기관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i></p>	
<p>제6조(여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의 여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p>	<p>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p>	<p>제3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p>

<p>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 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주요 여성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라. <u>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u>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여성단체 및 여성사회 교육기관 지도·육성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부산, 울산, 진주가 거의 유사하나, 몇가지 사항은 빠지거나 추가된 경우가 있음</p> <p>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발생예방 및 지원 마. <u>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u> 바.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u>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u></p> <p>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시행계획의 수립·</p>	<p>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u>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u>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 <u>진주의 조례에는 시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요청자의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u></p>
--	--	--

<p>②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좌동</p>	
<p>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 울산과 진주에는 추진 실적 평가의 경영평가 반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p>	
<p>제9조(예산·정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좌동</p>	<p>제4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좌동</p>
<p>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p>	<p>②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p>	<p>② 좌동</p>

<p>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장구하여야 한다.</p> <p>☞ 부산에는 <u>성별영향평가 조사에 관한 규정</u>이 없음.</p> <p>제10조(성별분리통계구축)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p>	<p>으로써 위 정책이 양성 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u>성별영향평가조사</u>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과 <u>성별영향평가조사</u>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 울산에는 <u>성별분리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제38조</u>에 규정.</p>	<p>☞ 진주에는 <u>성별영향평가 조사에 관한 규정</u>이 없음.</p> <p>☞ 진주에는 <u>성별분리통계에 관한 규정</u>이 없음</p>
<p>☞ 부산 조례에는 <u>정책수요·욕구 조사 및 공청회 정책 반영·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u>이 없음.</p>	<p>제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건의된 사항</p>	<p>☞ 진주 조례에는 <u>정책수요·욕구 조사 및 공청회 정책반영·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u>이 없음.</p>

<p>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p> <p>① 소속기관장등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여성정책수요 욕구조사결과 및 공청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한다.</p> <p>제8조(시정참여 확대)</p> <p>①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비율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의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여성위원 위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참여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단, 신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시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p>	<p>☞ 부산, 진주와는 달리 울산에서는 인사·재정·도시계획 등의 위원회 여성고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 부산과 진주에서는 여성위원 참여 현황에 대한 공개와 기관장의 사유보고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 함.</p>
---	--	---

<p>제12조(공직참여 촉진) ① 시장은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p>	<p>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p> <p>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① 좌동</p> <p>② 시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제1항에 의한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고용평등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p> <p>④ 좌동</p> <p>⑤ 시장은 시정의 주요 보직에 여성을 적극 배치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 울산에서는 제11조에</p>	<p>☞ 진주에서는 부산의 상위직 진출 확대 노력과 울산의 공직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 진주에서는 양성평등의</p>
--	--	--

<p>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등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규정하고 있음.</p>	<p>식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의무와 교육편성노력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울산과 진주에서는 모성보호 강화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p>	<p>☞울산과 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인적 개발의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 울산과 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여건 조성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 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인적 개발의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제16조(경제활동 지원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4월 첫째 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p>		
<p>제17조(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 ①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p> <p>②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해야 한다.</p>	<p>☞ 울산과 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 복지 및 권익 증진 의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 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인적 개발의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③시장은 여성노인 및 장애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④기타 시장은 여성인권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진주에서는 시장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의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음.</p>
<p>제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li> <li>2.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li> <li>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li> <li>4. 기타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p>☞울산과 진주에서는 직장 및 가정 생활의 조화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p> <p>☞울산에서는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p>	
<p>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p> <p>①소속기관장등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p> <p>②소속기관장등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p>		

<p>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④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울산에서는 제15조에 규정.</p>	
<p>제20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권익·복지증진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 부산과 진주에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p>	<p>제10조(추진실적 평가)</p> <p>①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여성정책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p>	

	<p>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기간/시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성차별 개선 등)</p> <p>①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 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p>	
--	---	--

<p>부산과 진주에는 상대적으로 울산에 비해 경제활동 지원, 복지 증진에 관한 조항이 미흡함</p>	<p>방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④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제13조(경제활동 지원)</p> <p>①시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p>	
---	--	--

<p>부산은 제23조에 규정</p>	<p>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가해자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성매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직업훈련 및 자활을 지원해야 한다.</p> <p>제15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진주는 관련 규정이 없음</p>
---------------------	--	----------------------

<p>제21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 부산과 진주에는 의견수렴창구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p> <p>↳ 부산에는 제26조에 규정.</p>	<p>제16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7조(국제협력 지원) 좌동</p> <p>제18조(의견수렴창구의 운영) ①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제안자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제19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p>	<p>↳ 진주에는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음</p> <p>↳ 진주에는 유공자 포상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p>
---	--	---

<p>제22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3조(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4조(여성주간행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7월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운영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구청장·군수·공공단체 등에서는</p>	<p>상할 수 있다.</p> <p>☞ 울산과 진주에는 여성단체의 지원이나 주간행사, 건강의 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p>	
--	--	--

<p>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념행사</li> <li>2. 연구발표행사</li> <li>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li> <li>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li> <li>5. 기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li> </ol> <p>제25조(건강가정의 날 운영) ①양성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이 평등한 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중 1일을 “건강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건강가정의 날"은 여성주간기간중 토요일로 한다.</p> <p>③시장은 "건강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6조(유공자 표창) 시장</p>		
--	--	--

<p>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기관</li> <li>2. 남녀고용평등도범기업</li> <li>3. 평등부부</li> </ol> <p>제27조(설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심의와 여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u>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u></li> <li>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li> <li>4. <u>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li> <li>5.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li> <li>6. 「<u>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u>」에 따른</li> </ol>	<p>제20조(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좌동</p>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p> <p>제24조에 규정된 기능은 제24조에 규정된 기능에 비견하여 열거하고 있음</p>	<p>제5조(위원회 설치) 좌동</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li> <li>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 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li> <li>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li> <li>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li> </ol>
--	--	--

<p>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p> <p>7. 기타 여성정책 추진관 련 주요사항</p> <p>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행정자치관, 여 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 과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21조(구성) ①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하여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5급 이상 관계공무원</p> <p>2. 시의원</p> <p>3. 여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추천을 받은 자</p> <p>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 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p> <p>5. 기타 시장이 여성정 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p>	<p>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 인을 포함한 19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은 기획문화국 장, 사회환경국장</p> <p>2.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p> <p>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 가 2명</p> <p>나. 여성과 관련한 사회 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자 다. 여성관련 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 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 다고 판단되는 자</p>
---	---	---

<p>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3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p> <p>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는 자</p> <p>③시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22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2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p> <p>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p> <p>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p>
---	---	--

<p>3. <u>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u></p> <p>4. <u>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u></p> <p>5. <u>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p>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3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u></p>	<p>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는 <u>분기별 1회 개최</u>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u>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u>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u>시민이 300인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u></p>	<p><u>원하는 경우</u></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부산과 동일</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u>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u></p> <p>② <u>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2조(회의) ① 좌동</p> <p>② 정기회는 <u>연 2회 소집</u>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u>재적위원 1/3 이상</u>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p> <p>☞ <u>부산과 진주와는 달리 울산은 시민이 회의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u></p>
--	---	---

<p>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del>부산과 진주에는 녹음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del></p>	<p>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④좌동</p> <p>⑤좌동</p> <p><del>울산은 제25조에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있음</del></p> <p>⑥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p> <p>제24조 (기능) 위원회</p>	<p>③좌동</p> <p>④좌동</p> <p>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 필요한 협조 요청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p>
---	---	---

	<p>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li> <li>2. 여성정책관련 예산 편성</li> <li>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정책</li> <li>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여성단체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여성관련 통계,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li> <li>7.여성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li> <li>8.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정책관련안건</li> <li>9. 여성관련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ol> <p>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분과위원회) 위</p>	<p>☞ 부산과 진주에는 분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음</p>
--	--	-------------------------------------

<p>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3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6조(설치) 시장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p>	<p>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del>제14조</del> 울산에는 간사규정에 없음</p> <p>제27조(위원회의 수당) 좌동</p> <p>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좌동</p>	<p>제14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담당주사가 된다.</p> <p>제15조(실비보상)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기금의 설치) ①좌동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p>
--	---	--

<p>제37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출연금</li> <li>2.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3. 기타 수입금</li> </ol>	<p>②좌동</p>	<p>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u></li> <li>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3. 기타 수입금</li> </ol>
<p>제38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li> <li>2.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li> <li>3. <u>여성의 국제협력사업</u></li> <li>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li> <li>5.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li> <li>2. 여성단체사업 및 운영지원</li> <li>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li> <li>4.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li> <li>2. <u>여성정책의 개발·연구</u></li> <li>3.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li> <li>4. <u>여성지도자 양성사업</u></li> <li>5.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기금의 사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액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p>
<p>제39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p>	<p>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좌동</p>	<p>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예산외로 처리한다.</p> <p>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del>부산에서는 제41조에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있음</del></p> <p>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계획</li> <li>2. 기금의 결산보고</li> <li>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u>결산 잉여금</u>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p> <p><del>울산에서는 제35조에 관련 규정이 있음</del></p> <p>제32조(기금운용심의)</p> <p>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3. 기금의 지원 대상사</li> </ol>	<p>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p> <p>제2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관: 가정복지과장</li> <li>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담당주사</li> </ol>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1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	---	---

<p>부산과 진주에는 시민제 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p> <p>제4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p> <p>4. 기금 사용 적정여부</p> <p>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p> <p>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p> <p>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p> <p>제33조(시민제안) 시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p> <p>제34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	---	--

<p>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4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정책관</p> <p>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업무담당사무관</p>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p> <p>제42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p> <p>2. 적립금 운용명세서</p> <p>3. 당해연도기금운용명세서</p> <p>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p> <p>제44조(부산여성상) 양성</p>	<p>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사항</p> <p>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p> <p>제35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36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기념행사) ①</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

<p>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부산여성상을 시상한다.</p> <p>제45조(시상) 여성상은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 여성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4.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여성</p> <p>제46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에 정일 현재 시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선정한다.</p> <p>제4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소속기관의 장·투자기관의 장이</p>	<p>시장은 매년 여성주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p> <p>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p> <p>③시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시민으로 한다.</p> <p>제38조 (성별분리통계</p>	
--	---	--

<p>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48조(시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9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p>	<p>구축) ①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한다.</p> <p>②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조사사업을 수행한다.</p> <p>제39조 (여성관련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관련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정보에는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li> <li>2. 여성정책 관련예산</li> <li>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여성정책</li> <li>4. 기금의 조성, 관리·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5.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li> <li>6. 기금의 정산, 지원 대상사업의 사후평가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li> </ol>	
---	--	--

	<p>7.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업무계획 및 기말평가</p> <p>8. 여성관련시설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서, 기 말보고서</p> <p>9.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p> <p>10.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p> <p>11. 공무원 및 소속직원 의 직급별 성별 통계</p> <p>12. 여성의 보직 실태</p> <p>13. 성별분리통계</p> <p>14. 기타 여성관련 통계</p> <p>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정보를 분기별로 갱신하 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 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p> <p>제40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문 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과 관련 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 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 다.</p>	
--	--	--

	<p>울산은 여성관련 정보시스템구축과 공개 그리고 소수자 여성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음</p>	
--	--	--

### 3.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진주시 · 경상남도의 현행 인권관련조례 실태의 비교정리표

저소득주민 관련 인권 조례 현황				
시·도 명 / 비교 조례명	경상남도	진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	○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	없음	없음
시세 감면 조례	없음	○	없음	○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	없음	없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시행규칙)	없음	○	없음	없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	없음	없음	없음
사회복지기금 조례	없음	없음	○	○

			(사회복지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p>1. 부산광역시의 경우 저소득주인에 관련된 조례들은 주로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저소득주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있음.</p> <p>2.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인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p>				
<b>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현황</b>				
보육조례	○	○	○	○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p>1. 비교대상인 4지역에 모두 보육조례가 있으나, 울산광역시 보육조례상의 "취약보육" 부분이 있는게 특이함.</p> <p>2. 진주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p>				
<b>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현황</b>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	○	○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없음	없음	없음	○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장애인종합복 지관설치및운 영조례)	△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조례)	○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없음	없음	○	○
<p>1. 공공시설내의 매장·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계약의 해지” 부분이 없음</p> <p>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는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자활자립상조례”가 있고, 진주시에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음</p>				
<b>노인 인권 관련 조례 현황</b>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	없음	없음
장수수당 지급조례(시행규칙)	없음	○	없음	없음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없음	없음	○
<p>1. 울산광역시에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p> <p>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p>				
<b>여성 인권 관련 조례 현황</b>				
여성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없음	○	○	○ (여성회관 시설 운영 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	○	○	○
1. 울산광역시에는 여성과 관련된 특별한 조례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b>거주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 현황</b>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없음	○	○	없음

#### IV. 법제 개선방향과 입법안 연구

-부산광역시 인권관련 조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1. 인권기본조례의 부존재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전체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통일된 지역공동체의 인권의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조례 혹은 포괄적 인권조례라고 한다<sup>116)</sup>. 이러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존재는 당해 지역 내에서의 인권의식의 확산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키고, 강화해 갈 수 있는 토양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인권기본조례를 명문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하여 제정하고 있는 예가 드물다.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어 있는 곳으로 유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 광주광역시의 경우이며, 그것이 바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sup>117)</sup>"이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니

116) 김중섭, 지역사회의 인권발전과 조례제정, 현상과 인식(2007. 겨울), 38면.

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의 내용구조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만한 주민의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규정내용이 흠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인권기본조례로서의 적실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sup>117)</sup>, 이후의 인권관련조례들의 일정한 방향성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에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의식과 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인권개념을 선언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주체나 영역별 인권을 개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주체나 영역과 관련된 다른 조례들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내용의 조례들이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나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인권보장과 체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구조화하고, 부분별 인권조례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심적인 위치체로서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은 부산광역시 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들 중 그 명칭 속에서 명시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로 현행 조례들의 규정 속에서도 인권 개념의 진화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요소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2. 인권과 복지권 관계설정의 혼란과 새로운 인식 정립의 필요성

---

117) 2007년 5월 15일 제정.

118)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제2호, 195면 이하.

인권과 복지권의 개념은 有關的이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일 수는 없다. 개념의 의의는 물론이고 권리의 실현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두 개념은 차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들 속에는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혼용의 경우도 눈에 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러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충족해주는 이념이자 규범이 바로 인권인 것이며, 이러한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제도적으로 승인되고 표현되는 형식에 따라 시민권이나 기본권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상실된 인간의 가치와 생활을 개선하고 새로이 유지해 가기 위한 복지권의 등장과 의미도 기본적인 인권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실천도 인권실현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sup>119)</sup>. 다만 이 두 개념은 그것이 정책 속에 반영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되는 과정에서는 그 실현방법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즉 복지권의 실현과정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전체적인 조화를 지향해 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규정된 복지권 실현 내용의 실천이 곧바로 사회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과 복지권 개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화해 나감에 있어서 조례 제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

---

119) 윤찬영,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 이해, 복지동향(2005. 5), 6-7면; 김주연,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의의, 인권복지연구. Vol. 2(2007년 10월), 41-77면; 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해원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2005) 참조.

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 일부 구성원 계층에 대한 복지권의 보장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단계적 복지실현 내용으로 점차적인 발전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한 강제규정이나 의무부과 또는 권리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도입 보다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규정 내용의 모색과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전제한 공동의 가치를 마련해 가야만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공간적·문화적 긴밀성이 긍정적인 배경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차적이되 부단한 과정적 진전을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의 실현절차로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 부산광역시의 인권관련조례들은 자치입법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주체나 관련쟁점별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특정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적잖게 수혜 또는 배려로 인식될 만한 것들이 다수 존재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다수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통한 소수 또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일방적인 배려조치로 인식되어질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태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좀더 사회 전체적인 합의점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와 그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거주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의 不在

본 연구를 위한 전체적 논의로서 앞 부분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개념에 있어서, 글로벌 시대라는 현대적 추세에 의해 생겨난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적인 증가를 반영한 또 하나의 집단이 다문화가정의 문제나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

고 있는 거주외국인의 문제였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배경으로 지난 2006년 당시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대우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 내에서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입안하여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부산광역시 내에는 아직까지 거주외국인을 조례의 중심주체로 내용을 마련한 조례가 없다. 이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 현실이며,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상의 선거권 인정이라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 현실과도 어긋나는 부산광역시의 개선되어야 할 현실로 평가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거주 결혼이민자 현황<sup>120)</sup>은 8,488명(여 4,714/ 남 717/ 자녀 3,057), 전국<sup>121)</sup>의 5.3%이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10,613명(여 1,798 남 8,815)<sup>122)</sup>에 이른다.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거주 외국인은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외국인 한사람의 인권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주외국인의 가족과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 등이 연계적으로 반응

120) [http://family.busan.go.kr/08\\_culture/01\\_01.jsp](http://family.busan.go.kr/08_culture/01_01.jsp)

121) 전국 : 160,720명 (여성 89,002 남성 13,711 자녀 58,007 )

12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25개국				10,613명			
중 국	1,324	태 국	768	몽 골	312	네 팔 등	610
캄보디아 등	329	우즈베키스탄 등	589	필리핀	947	러시아	116
조선족	2704	베트남	1,697	미국	29	일본	7
인도네시아	1,009	대만	24	기타	148		

하게 되는 복합적인 지역문제임을 주목해야만 한다. 즉 지역공동체 속에서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근로자의 문제 등 다면적·복합적인 인권보장요청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sup>123)</sup>과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조례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규정하였는데 시민들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이해홍보, 다문화 가족생활에 기본적인 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 필요한 지원 마련,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민간 경상보조금등 예산지원(편성) 근거도 마련하고 부작용과 위법사항의 빈발로 인한 감독관리가 요청되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시청의 지도 감독에 관한 것과 다문화 가족의 생활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두었다고 한다. 이것을 기점으로 거주외국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방면의 권리보장 조례들이 독립적인 형태이건 기타 권리보장 등과 관련된 조례의 일부라는 형태이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 4. 노인 인권관련 조례의 흠결 보완 필요성

사회적 약자로서의 대표적 유형임과 동시에 의학과 기술력의 발전에 따른 노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권리보장과 배려가 입법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89년, 1993년,

---

123) 2008.3.21 제정, 2008.9.22 시행.

1997년, 1999년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先가정보호·後사회복지라는 정책기조가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 법에 기초해서 실시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한쪽 귀퉁이에 치우친 수습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현행 부산광역시의 조례들 중 노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이 입안된 관련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을 뿐, 그 밖에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금 등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 속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다.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제도적 권리들을 고유하고 전문적으로 입안해 두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치료나 요양 차원의 문제가 아닌 노인계층 전체의 복지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고령화된 사회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주요 구성원인 노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새로운 권리들이 입안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보장적 조치들이 구체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 중에서도 일정 연령 이상의 장수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분된 권리보장이나 실제로 생활수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보장체계들이 필요한 것이다.

##### 5. 여성 인권 보장 제도화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하며,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 여성발전 기본법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이러한 이념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여성을 위한 기본조례로 선택하여 제정한 것이 여성발전 기본조례로서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평등개선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부산광역시 여성상을 수여하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날을 지정하여 그 의미를 새기는 등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다도 여성을 위한 기본조례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여성인권관련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 내용들이 다소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소수자이며 사회적 약자계층에 위치해 온 여성들의 생활과 지위가 제도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보장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들의 내용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제 후보자의 여성비율을 특정화하고 있는 예와 같이 여성의 지위를 권리로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필요성으로부터 모색되고 정립되어 담겨져야만 한다. 또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어서 복합적인 취약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강구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특히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

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sup>124</sup>)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에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상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위촉하게 되는 위원의 수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장애인의 몫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보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장애인으로서의 약자의 지위와 여성으로서의 약자의 지위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을 상위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규정이 부산광역시에서는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6.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질적 입법화와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성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이 고단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건 인문과학적 단어로서의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생래적 인권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장애인이 당연히 향유하고 있는 제반의 권리들을 차별 없이 그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체계가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는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준다는 또는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공감대로 전제되어야 하고, 되돌려서 보장해야 하는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

---

124) 김정열 외,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2) 참조.

의 현실적인 생활이 기준으로 수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역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각종 제도들의 구체적인 적용요건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제3조 규정과 같이 단순히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의 유형별 구분을 전제한 여러 장애인 그룹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사항을 기획·조사·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sup>125)</sup>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sup>126)</sup>에 대해서도 상세한 언급이 없어서 위임입법의 체계에서 이것은 중대한 입법불비사항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부작위적 입법흡결의 행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 자체 조례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체계는 더 개선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25) 개정 2008. 2. 29.

126)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제40조 등 참조.